

조나단 안 (Jonathan's Law) 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 조나단 안이란 무엇입니까?
-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이 법은 어떤 시설에 적용됩니까?
- "사건"이란 무엇이며 "신고 대상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 사건과 관련된 다른 기록 또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기록과 서류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 언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자격 있는 사람이 획득한 기록 또는 서류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자세한 정보 또는 도움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조나단 안이란 무엇입니까?

특수 수용 시설에서는 조나단 안 (Jonathan's Law)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그 시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성년 또는 성인 환자의 법적 보호자 및 부모에게 이들과 관련된 사건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자격 있는 사람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정 서류를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조나단 안에 의거하여 자격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환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 성인 환자의 부모, 법적 보호자, 배우자, 성인인 자녀로 성인 환자를 대신해 법적으로 의료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또는
- 법원에서 행위무능력자로 판결하지 않은 성인 환자

이 법은 어떤 시설에 적용됩니까?

아래 주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거나, 면허를 부여했거나, 승인한 모든 시설은 조나단 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발달장애사무소 (Offic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OPWDD))
- 정신건강국 (Office of Mental Health (OMH))
- 알코올 중독 및 약물 남용 서비스 사무국 (Office of Alcoholism and Substance Abuse Services (OASAS))

“사건”이란 무엇이며 “보고해야 하는 사건”이란 무엇입니까?

- "사건"은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안전 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부상을 의미합니다. 수용된 사람의 건강, 안전 또는 안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심각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사건"은 의무적 신고자가 NYC 장애인 보호 법무 센터 (NYS Justice Center for the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Justice Center)) 에 보고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학대, 방치, 심각한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 시설에서는 수용된 환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또는 부상을 사건의 최초 보고 후 24 시간 이내에 전화로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자격 있는 사람의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시설에서는 서면 사건 보고서 사본을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 사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위해서 시설에서는 반드시 자격 있는 사람과의 회의를 주선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누구에게 통보됩니까?

시설 담당자는 사건 최초 보고 후 10 일 이내에 사건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예: 사건 관련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사항)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다른 기록 또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조나단 안에 따라 서면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는 학대, 방치, 심각한 사건 (신고 대상 사건) 의 진술 및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서류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법무 센터로 보고된 학대 또는 방치 사건의 조사가 완료되면, 법무 센터에서는 이를 수용 환자 또는 법적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학대 및 방치에 대한 신고는 입증될 수도 있고 입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로 서면 요청 시, 자격 있는 사람은 해당 조사 완료 후 21 일 이내에 법무 센터에 보고된 학대 또는 방치 사건의 조사와 관련된 기록 또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시설에 수용된 다른 환자 또는 시설 직원의 이름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들의 승인이 없는 한 편집됩니다.

연방법 및 규정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담긴 기록 및 자료 공개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법에서는 OASAS 제공자가 시설에 수용된 환자의 특별 동의(미성년 또는 성인에 상관 없이) 또는 연방법에 부합하는 법정 명령이 없는 한 해당 환자의 신원이 확인 가능한 어떤 기록 및 자료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미성년이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환자 본인과 부모 또는 보호자 양측의 정보 공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기록과 서류를 어떻게 요청합니까?

사건 및 조사 기록에 대한 요청은 사건 당시 해당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의료 시설로 해야 합니다.

법무 센터에서 학대 또는 방치(신고 대상 사건)에 대한 진술을 조사할 때 법무 센터는 의료 시설과 협력하여 조나단 법과 장애인 보호법에 따라 기록 및 자료 공개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언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 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면, 해당 시설에서는 조사 완료 후 21 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획득한 기록 또는 서류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예. 2013 년 발효된 조나단 법 개정 내용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사건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를 수령한 자격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자
- 행동 관련 의료 서비스 제공자
- 법 집행 기관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자격 있는 사람이 믿는 경우) 및/또는
- 자격 있는 사람의 변호인

자세한 내용 또는 도움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 조나단 법에 관한 정보는 뉴욕주 정신 건강법 (NY Mental Hygiene Law) 제 33.23 조 및 33.25 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호법 (Protection of People with Special Needs Act) 2012 년 법 제 501 장.
- OPWDD 시스템 내에 있는 기록 및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추가 요건사항은 14 뉴욕주 행정 규정 (NY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제 624.6 조 및 624.8 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자 기록에 대한 접근 및 OASAS 시스템 내 기록에 대한 재공개를 위한 추가 요건은 42 미국 연방 규정집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2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PWDD "사건 확인 방법 (Learning About Incidents) " 안내책자에 기록 접근 방법에 관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OPWDD 홈페이지 www.opwdd.ny.gov/node/395 에서 확인하십시오.
- OPWDD 안내 전화는 1-866-946-9733 번이며 TTY 사용자는 1-866-933-4889 번을 이용하십시오. 홈페이지 www.opwdd.ny.gov 를 참고하십시오.
- 법무 센터 정보 및 의뢰 부서 무료 전화는 1-800-624-4143 (음성/스페인어/TTY) 이며 이메일 주소는 infoassistance@justicecenter.ny.gov 입니다.